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. 5. 16 선고 2018가단4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5. 9.

판결 선고 2018. 5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1994. 2. 5. 접수 제71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전재혁

별지